

홍익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장전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대학원생 인권장전」은 모든 대학원내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더불어 대학원 연구 환경의 개선을 통해 대학원생의 학문 증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 2장 대학원생의 권리와 의무

제2조(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 ① 대학원생은 학업, 연구, 재정지원 및 조교 근무 등을 포함한 대학원 내의 모든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 ② 수업 및 행정절차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조장할 경우, 대학원생은 어떤 불이익 없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지닌다.

제3조(교육과 평가)

- ① 대학원생은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지도교수 및 학과로부터 적절한 지도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② 대학원생은 학내외의 가용한 모든 물적·지적·인적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대학원생은 정당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제4조(알 권리)

대학원생은 대학원 과정 동안 학습계획 및 진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지닌다.

제5조(학업의 지속)

대학원생은 정당하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를 침해받지 않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학업을 지속할 권리를 지닌다.

제6조(복리후생권의 보장)

대학원생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지닌다.

제7조 (안전권의 보장)

대학원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연구·근무를 수행할 권리를 지닌다.

제8조(연구결정권 및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보장)

-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진로와 무관하며 스스로도 원치 않는 연구·프로젝트·조교근무를 어떠한 불이익 없이 거부할 권리를 지닌다.
- ② 대학원생은 교수, 교직원 및 동료의 사적 이익을 위한 업무요청을 거부할 권리를 지닌다.

제9조(사생활 보호권 보장)

-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② 대학원생은 정해진 학업·연구·근무 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 ③ 대학원생은 사적인 시간에 학내외의 다양한 활동에 어떤 불이익 없이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장)

- ① 대학원생은 자신이 참여한 모든 연구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인정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②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물의 지식재산권은 그 공동연구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제11조(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 보장)

- ① 대학원생은 학업, 연구, 조교근무를 포함한 어떤 상황에서도 인격적인 모욕을 받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 ② 대학원생은 폭언·욕설, 체벌·구타 등 신체적 위협, 불쾌한 신체접촉·추행, 음주 및 동행강요, 성희롱·성폭력, 성 차별 및 비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지닌다.

제12조(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의 보장)

- ① 대학원생은 논문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 및 접대의 제공 없이 충실히 지도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② 대학원생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불이익 없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권리를 지닌다.

제13조(권리구제 및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침해되거나 심각한 고충과 직면할 때 이를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인권전담기구를 이용할 권리를 지닌다.
- ② 대학원생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제14조(그 밖의 권리 보호)

본 권리지침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원생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15조(대학원생의 의무)

- ① 대학원생은 대학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규정 및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② 대학원생은 바람직한 원내 면학분위기 조성하고, 학업 및 연구수행, 지도교수의 지도 등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
- ③ 대학원생은 연구의 수행 및 발표 등에 위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연구비 집행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 ④ 학내 연구공간 및 지원시설에 대해 책임감 있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부칙 본 인권장전은 2017. 4. 1일부터 시행한다.